

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지침

제정 1995. 1. 1 개정 2009. 1. 1
개정 2002. 2. 1 개정 2015. 1.28
 개정 2018. 9. 1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법인과 경영학교의 임원 및 교직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

제2조(지급대상)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인 임·직원 (무보수, 계약직, 임시직 및 일용직 제외)
2. 경영학교의 장 및 교직원 (비전임교원, 조교, 연구원, 무보수, 계약직, 임시직 및 일용직 제외)

제3조(지급기준)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법인 임직원 및 경영학교 장, 임원, 교직원 및 가속기연구소 직원에게는 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여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.
 - 가. 자녀가 특수계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포항제철고등학교 등록금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. 단, 지급한도는 서울지역 일반공립학교 등록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.
 - 나. 자녀가 제 가목 이외의 고등학교(국외 학교 포함)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서울지역 일반공립학교 등록금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.
 - 다. 장학금은 1자녀당 고등학교 과정에 대해 각 12분기(입학금은 각 1회) 이내에서 지급한다.
 - 라. 장학금은 제 가목 및 제 나목의 한도 내에서 등록금액 (입학금 + 수업료 +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)의 100%를 지급한다.
 - 마. 단, 등록금이 없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장애자녀(만15-17세)의 경우에는 포항 지역 일반공립학교 등록금 한도 내에서 등록금을 제외한 타 항목으로 지급한다.
2. 법인 임직원 및 경영학교 장, 임원, 교직원의 자녀가 교육인적자원부가 정하는 대학(2년제대학 포함)에 재학중이거나 국외의 대학에 재학 중일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.
 - 가. 자녀학비보조수당은 2자녀 이내에서 지급한다. 다만, 셋째 자녀가 첫째 또는 둘째 자녀와 쌍생아일 경우에는 3자녀 이내로 한다.
 - 나. 수당지급액은 자녀의 등록금중 입학금, 수업료, 기성회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

하며, 자녀가 국외의 대학에 재학중일 경우에는 연세대학교 동일계열(학과) 기준액으로 지급한다.

다. 수당의 지급기간은 자녀가 재학하고 있는 대학의 기준수입년한으로 하며, 총 지급기간 범위(4년제:8회, 6년제:12회) 내에서 수혜자녀를 교체할 수 있다. 다만, 수혜자녀를 교체할 경우 입학금은 수당 지급액에서 제외한다.

라. 수당의 지급시기는 2월(1학기), 8월(2학기)의 급여지급일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금 내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학기 기준액으로 지급한 후 익월 급여지급시에 가감 정산할 수 있다.

마. 수당은 수당지급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법인 및 경영학교의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며, 이미 지급된 수당은 계산착오 등을 제외하고는 환수하지 않는다.

바. 수당은 수당지급일 기준 근속 1년 미만의 교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법인 및 경영학교 임원과 부교수급 이상의 교원은 근속 제한이 없으며, 직원의 경우 POSCO 그룹내 재직기간은 근속연한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.

제4조(중복수혜제한) ①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부부가 법인 및 경영학교의 임원 또는 교직원으로 근무할 경우 일방에게만 지급한다.

② 법인 및 경영학교에서 근무한 자가 퇴직후 재임용된 경우 당해 임원 또는 교직원이 퇴직전 수혜 받은 자녀학비보조수당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장학금은 재임용된 후 이 지침에 의거 이미 수혜 받은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지침은 1995. 1. 1부터 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1. 이 지침은 1999. 9. 1부터 개정, 시행한다.
2. 대학자녀의 학비보조수당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장학금 지급지침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02. 2. 1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1. 이 지침은 2009. 1. 1부터 개정,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제3조 제1호 제 나목은 2009년 입학자녀부터 적용한다. 단, 2008년도에 특수계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진학한 자녀는 동일계열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15. 1. 28부로 개정하되, 2016년 입학자녀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18. 9. 1부로 개정하되, 제3조 1호 마목은 2018.12.1일부로 적용한다.

자녀학비 보조수당 지급(변경) 신청서				급 여 부 서	담 당	팀 장	
보호자 인 적 사 항	직 번		소 속				
	성 명		주민등록번호				
대 상 자 인 적 사 항							
▣ 대학생 자녀 (대상 : 학교장, 임원, 교직원)							
구 분	성 명	주민등록번호	학 교 명	학 과 명	학 년	장 학 금 총 수 혜 횟 수	비 고
장학생 1							
장학생 2							
장학생 3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장학생 3란은 세번째 자녀가 첫째 또는 둘째 자녀와 쌍생아일 경우에만 기재 • 장학금 수혜대상자 변경시는 종전 장학금 수혜자 성명을 비교란에 기재 							
▣ 중·고 자녀 (대상 : 학교장, 임원, 가속기연구소 직원)							
구 분	성 명	주민등록번호	학 교 명	학 년	비 고		
장학생 1							
장학생 2							
장학생 3						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※ 가속기연구소 소속 이외 교직원의 중·고자녀 장학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교직원 보수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위 신 청 인 (인)</p>							
<p>※ 첨부서류 : 1.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1부 (최초신청시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2. 공납금(중·고), 등록금(대학)고지서 또는 영수증 (사본가능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3. 쌍생아 증빙서류 (해당자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4. 학과 및 학년이 표기된 해외대학 재학증명서 (해당자)</p>							